

고 시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-34호

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2015.10.12.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허용 결정되고, 2016.03.15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7-97호(2017.09.14.)로 사업시행인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307-1번지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3월 29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307-1
- 면 적 : 4,838㎡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연희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최덕희)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4, 2층

라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.03.22.

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-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('17.09.14. 사업시행인가 고시 기준)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건폐율/용적률 (%)	층수 (최고높이)	주용도
4,838	917.57	15,924.88	18.97/249.94	지하1층/지상20층 (58.2m)	공동주택(아파트 146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
○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
	계	44.2㎡	59.2㎡	59.6㎡	72㎡
계	146	16	38	76	16
토지등소유자	73	5	33	29	6
보류지	1	-	-	-	1
일반분양	72	11	5	47	9
임대	-	-	-	-	-

○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해당사항 없음

○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이주완료 후 3개월 이내